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25. 9.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목 차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17개) ····· 1

2. 4.16세월호참사 분야(17개) ····· 28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16개) ····· 49

※ 旣조치완료 과제 제외

분야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총 26개)

연번	권고사항	대상
1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 사과	대통령
	▸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적극적 피해자 지원	환경부장관
2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개정*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3	▸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4	▸ 신속심사 대상을 全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환경부장관
5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을 구제법에서 구제 및 지원법으로 체제 개정* * 개정시 피해지원 항목확대,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확대, 아동청소년 피해자 간병비 지급 포함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6	▸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건강 조사 · 연구 진행,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7	▸ 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개선 등 전문위원 운영 투명성 제고	환경부장관
8	▸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민·관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9	▸ 디스커버리 제도(소송전 증거 절차) 도입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제도 추진	법무부장관
10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위증죄 관련 조사와 고발 가능	국회의장
11	▸ 실증자료 생산시기 규정 및 미실증 책임 규제규정 도입	공정거래위원장
12	▸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13	▸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위원회	국무총리
14	▸ 화학물질관리본부(환경부) ·위해성평가부(국립환경과학원)로 기존조직 확대 및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독립기관 설립	환경부장관
15	▸ 국가독성연구전담기관 또는 국가독성연구프로그램 마련	과기정통부장관
16	▸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및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17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성격 확립 및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18	▸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19	▸ 효율적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20	▸ 중점관리물질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환경부장관
21	▸ 화학제품의 비관리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 실태조사 실시 및 시장감시 범위 확대	환경부장관
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23	▸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제품 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확대 도입	산업부장관
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25	▸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 국민연금 ESG평가지표 내 소비자안전·공급망 실사·인권실사 등 반영	복지부장관
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1-3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연장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기 바랍니다.

※ 소관 변경 : 법무부 → 환경부(법무부, 소관부처 변경 요청, '22.9)

□ 이행 현황

○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연장은 특별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각 법무부 소관) 등 일반법을 개정하기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환경부 소관)을 개정하여 권고사항의 구체적 이행이 가능(법무부 의견)

○ 이에, 환경부는「화학제품안전법」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검토('23~'24)

*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 : 신고·승인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승인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7년·10년 이하의 벌칙)

○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화학제품안전법」**에 **공소시효 특례(안)** (현행 7년·10년 → 20년*으로 조정) **마련('24.12)**

- 특례(안)에 대한 법무부 협의('25.2~3, 2회) → 법무부 검토('25.4~8)

* △피해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성(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판매유행시점('00)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기 까지 17~20년 소요), △독일 사례(10년 이상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20년) 등을 고려

□ 향후 계획

○ 법무부 검토의견 회신(9.2)에 따른 후속 협의 추진('25.9~12)

○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범부처 TF에서 공소시효 연장 검토('25.9~)

1-4	신속심사 대상 全 질환 확대 등 신속한 피해지원 실시	환경부장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744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신속심사대상을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신속심사*는 종합적인 개별판정 체계로 전환 시('20.9~) 판정 지연을 예방하고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신규로 발생한 질환에 대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 이후에 요양생활수당 지급 등 피해등급 결정을 위한 개별판정을 다시 실시함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노출기간, 건강상태, 진단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판정을 통해 구제급여지급을 결정하되,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일부 질환(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의 경우 발병시기·진료횟수 등 일정 조건 만족 시 피해 인정('20.9~)

○ 현재 신청자에 대한 판정이 대부분 완료(93%)*되어 적체 없이 개별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과, 신속심사 기준 마련이 가능한 질병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필요

* 판정완료율 : ('22.1) 4,274명(58%) → ('25.8) 5,908명(93%)

**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인정기준 마련이 필수

→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심사 확대 실효성은 높지 않아, 개별판정 속도 개선* 노력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한 인정 질환 확대** 등 신속한 피해지원 필요

* 기간 : (~'23) 4~5년, ('24~) 0.5~1년 / ** 폐암('23.9~)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판정도구 개발·활용('25.하) 등 건강피해 조사·판정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 지속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질환 근거 마련

- 호흡기계 질환 중심 연구에서 '25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전신 질환 연구 추진

※ ('25~'26) 피부 및 안질환, ('26~'27) 유사산, ('27~'28) 심혈관계 질환 등

1-8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 구성	환경부장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추모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추모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와 같은 추모 추진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법령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추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19.2)

-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추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 관련법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 **(법 제9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영 제14조의2제1항)**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 (피해자 의견수렴) 피해자 대표 간담회(환경부장관 '25.8.6, 대통령실 '25.9.3)

- 국가 주도의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 등 지원제도 마련

□ 향후 계획

○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추모사업 신청 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

○ 관계부처 TF, 전문가 자문 등 추모사업 지원 필요성 검토('25.9~)

※ 검토결과 등에 따라 법령개정 추진

1-9	디스커버리 제도 등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 도입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별 피해자의 경우 소송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증거절차)를 도입**하는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소송 부담 및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곤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

○ 21, 22대 국회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 6건 국회 논의 지원

주요내용	발의 법안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	(21대) 조응천 의원(10874)
문서제출명령 개선	(21대) 조응천 의원(10939), 박주민 의원(24043) (22대) 박범계 의원(9803)
진술녹취제도 개선	(21대) 최재형 의원(17771) (22대) 정준호 의원(3202)

□ 향후 계획

○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상대방, 제3자가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박범계 의원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1-11	실증자료 생산시기 및 미실증 책임 규제 규정 도입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 권고 내용

○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간주하는 등 **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도입**하기 바람.

□ 이행 현황

○ **(연구용역)**「표시광고법 실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23. 5 ~ 10)

- 국내 개별 법률에 포함된 실증제도 및 운영현황, 미국, 일본 등 실증제도 입법 동향, 실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

○ **(전문가 자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개최('23.11.30)하여 사업자 책임 강화방안 및 실증제도에 대한 사업자 인식 제고 방안 등 자문

○ **(실태조사)** 친환경제품 판매 사업자(250여 개) 대상으로 **실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24. 3~5)

○ **(법안발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운영실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24.12. 5, 유영하 의원)

*(주요내용)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표시·광고행위 전에 실증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정위가 제출 요청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추정

□ 향후 계획

○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 하겠음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추진중**, ~'25. 10)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유형으로 추가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예시로 적시

1-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044-202-2560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지역에 존재하는 독성 유해물질 파악 및 중독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센터로, ▲지역 기반 병원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정부 공인기관 등을 특징으로 함

□ 이행 현황

• (보건복지부 역할)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한 **급성중독환자** 발생 시 중독물질 분석, 해독제 투여 등 **신속한 중독치료** 지원
• (질병관리청 역할) 의료기관 기반의 중독 관련 현황 조사·연구·분석, 국민 일반 대상 예방·교육사업 및 정보제공 등

○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사업)** 전국 **응급실**('25, 412개소) **기반**으로 **해독제 거점병원**(18개소) 및 **중독분석실**(6개소) 운영

- **해독제 거점병원***을 **운영**('15~)하여 **고가·희귀 해독제**를 **비축·제공**하고, **중독분석실**('16~)을 통해 **중독물질 성분**을 **분석·제공**

* 거점병원 기능: 해독제 보관·관리, 거점병원에 방문하는 중독환자 치료,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해독제 요청 시 신속 공급

< 중독분석 및 해독제 공급 실적 >

(단위: 건)

	2020	2021	2022	2023	2024*
중독분석 실적	1,811	1,694	1,571	2,082	1,300
해독제 공급 실적	98	121	147	246	183

*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응급실 내원 환자 급감으로 실적 감소

- **중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18~)하여 **해독제 및 중독분석 요청·접수**, 해독제 사용법에 대한 **정보** 및 치료지원 **교육자료 제공**

□ 향후 계획

○ **(사업 확대)** 고가의 수입·희귀 **해독제 비축량 확대**('26 정부안 +80백만원)

○ **(연구·교육) 표본심층자료 조사연구** 및 **주요 병원**(해독제 비축 및 중독분석실 동시 운영)과 **협력**하여 **응급실 의료진 중독치료 교육 강화**

- **(연구)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유효표본 3,600건 이상)의 중독 원인물질·경로, 치료과정 등 **심층조사** 실시

- **(교육) 응급실 의료진 등 대상** 중독환자 특이사례 공유 및 새로운 중독치료방법 등 교육을 **격년 → 매년 확대** 실시

1-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2)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043-219-2911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독관련 **조사·통계사업**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 관련 **분석결과**를 **제공하고**(통계집, 분석 보도자료 등) 이를 활용한 **중독 예방 교육** 추진

- **(조사·통계)** 중독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실태조사*** 실시('22~'23)

· 응급실 내원한 급성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확인** 및 **설문조사를 실시**, 중독물질·성분, 중독경로, 증상 및 징후 등 조사

* "중독 심층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연구", 고려대 산학단 ('22.4~'23.12)
전국 15개 병원 응급실 내원한 급성 중독환자 10,742명 조사

- **(예방사업)** 심층 실태조사('22~'23) 결과를 바탕으로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 개발 및 예방사업**** 실시

* 청소년 대상 중독 질환 예방교육 실시('23년, 332개소, 약 11만명 자체교육)
** "중독의 생애주기별 위해 요인 평가에 기반한 예방 전략 개발" 연구 ('24, 고려대 산학단)를 통해 중독예방 콘텐츠 개발(영유아,노인용), 질병관리청 SNS 게재 및 유관기관 배포('25.3)

○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독정보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제공('25.5월~)

* 독성물질, 의약품, 기후정보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과 WHO, 미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 연계), 중독 등 관련 정보는 별도 영역으로 제공 중

□ 향후 계획

○ 손상예방법*에 의거 **중독을 포함**한 **손상의 예방**을 위해 **관련 연구 및 조사·통계 생산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추진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 법률」('25.1.24 시행)
제2조 정의 中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

* 손상관련 조사통계사업 추진 중(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중증외상조사)이며 해당 조사시 중독을 포함하여 조사 및 통계공표 중

1-13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	044-200-2244

□ 권고 내용

○ 국무총리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형태의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목적·용도 등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개별 법령으로 관리*** 중이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처리)제품 ▲(식약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농림부·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 비료·사료 등

- **제품 안전관리**에 한해 **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17.9,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산업부·복지부·환경부·식약처 등 12개 부처 참여,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필요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 등 협의

○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 관리·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행정위원회 설치는 광범위한 기능*, 그간 관리대상별 특성(제품별 유해정도 등) 및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관리제도를 차별화·분담해 온 현 관리체계의 효율성, 조직·예산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국가수준의 독성정보 연구·관리, 독성물질 및 위해성평가관리, 노출 피해질환 관리 및 국가통합감시체계 설치·운영 등

□ 향후 계획

○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분담**해 온 현행 체계 유지하되 **범부처 협력 필요시 국무조정실이 조정·관리**

1-14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부처와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내 화학물질 관리조직을 '화학물질관리본부'(차관급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로 확대하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를 '위해성평가부'로 확대하기 바람
-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화학물질청'이나 '통합 위해성평가기관'과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바람

□ 이행 현황

○ 그간 화학물질안전원('13)을 신설하고 화학안전과('15) 및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17) 하는 등 화학안전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

- **차관급 조직설립 등 대규모 조직 개편·확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여 **추진상 애로**가 있는 측면

○ 대안으로서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관 간 기능 조정('24.4.30)**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 수행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 그 결과,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화학물질 全주기 안전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화학분야 전문성 강화

※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조사·판정, 위원회 심의·지급결정 등 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여 'One-Stop'서비스 체계 구축('25.1~)

□ 향후 계획

○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지속 개선 노력

1-16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화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본법**) 법률의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바, 업계·시민사회 및 국회 등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선행 필요

- 다만, **권고 사항에서 제시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대다수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 ①화학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완료('23.12)
  ②이해당사자 상설소통협의체 구성·운영 → 화학안전정책포럼 구성·운영 중
  ③통합화학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

○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훈령 제1574호, '22.12.20.)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전문가 등)가 참여·소통하는 체계와 절차를 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소통하는 '**상설소통협의체'로 화학안전포럼 운영중***('22년~)

  * 화학안전정책포럼 24년 총 33회 개최

참고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해당사자 소통) 화학안전정책 관련 환경부의 업무담당자와 이해당사자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의논할 수 있다.

1.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환경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2.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다른 정부기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 향후 계획

○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속 운영(월 1회이상)

1-18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25.8 착수)

- 화학물질 △규제현황, △등록·신고현황, △유해성정보, △유통량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단일시스템**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법 등 개별법에 따른 **법정민원처리 온라인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접근성**을 **개선**

<목표시스템 구성도>



□ 향후 계획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계속, ~’27)

1-19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관리를 위해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위해성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공유·보완**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정보관리 체계 마련**

- 화학물질 정보 공개대상을 구체화*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24.2.6)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5.8.7)**

  *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등

- 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 등록·신고현황, 유해성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공개* 중

  * 現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後, 화학물질 공동활용 플랫폼

○ **(시스템)** 화학물질 사용자가 물질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5.12) 및 플랫폼 개발사업 착수('25.8~)

□ 향후 계획

○ 등록·신고된 물질 현황 및 유해성 정보 공개 확대(지속)

○ 화학물질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27)

1-20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6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흡입 노출과 같은 위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제품등록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점관리물질**)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용도·함유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화평법 개정, '24.1.4 시행)**하여 **중점관리물질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다만,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수량(현행 연간 1톤 초과)을 조정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국회*에서도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8.2)'
** (EU, REACH 규정) 고위해우려물질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초과한 경우임

○ (**제품등록제 도입**) 위해우려가 높은 흡입노출 위험제품은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에서 이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품등록제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이 있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 가습기처럼 **흡입노출에 의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분사제형의 살생물제와 보존제**의 경우 **사용가능물질 목록(함량제한)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규정**

□ 향후 계획

○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지정 고시* 개정 추진(지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1-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 신설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보 미보고로 인한 피해 경중의 고려 없이 단순 미보고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벌칙 처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제품안전기본법」상 중대사고 보고위반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7조(과태료) 사업자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사고(사망·화재·폭발사고, 전치 4주 이상 치료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

○ 타법에서도 유사한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임

- 아울러, **현재「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해성 등에 관한 **보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과 처분으로 벌칙조항 신설은 신중한 접근 필요

법률명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화학제품안전법」	새로운 위해성 등의 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제1항제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상사례의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7조제2항
「식품위생법」	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미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01조제1항제5호의2
	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거짓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제2호
「약사법」	부작용 등의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
「의료기기법」	부작용 관리 의무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4조 제1호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3호

□ 향후 계획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1-23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 활용한 제품 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확대 도입	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9

□ 권고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등 소비자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위해 **제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관계 부처에 확대 도입**하기 바랍니다.

< GS1의 GPC 개요 >

○ **글로벌 제품분류체계**(GPC: Global Product Classification)는 **소비자 상품 분류를 목적**으로 유통·물류 국제 표준화기구인 GS1*에서 제정한 **분류체계 표준**

* **GS1(Global Standard No.1)**: 전 세계 1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통·물류 분야 국제 민간 표준화기구, 대표적인 표준으로 **상품을 식별하는 '바코드'를 제정·운영**

○ **GPC는 일반적 4단계 분류체계를 확장 분류(4단계+α(속성))**할 수 있어 **사용연령·용도** 등 **추가 구분**이 가능하고, 소비자·제조업자·판매업자·규제기관·유통플랫폼 등이 **일관되게 제품을 분류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어 **제품 안전관리에 적합**

□ 이행 현황

○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하여 국내 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맞게 구현한 **표준 제품분류체계 개발('22.12월)**

○ **「표준 제품분류체계 시스템(www.gpck.kr)」 구축 및 가이드 배포('23.12월)**

○ 관계부처(환경부, 식약처) 대상 표준 제품분류체계 활용방안 안내('24년)

* 부처별 설명회(환경부 7.11., 식약처 8.14.), 제품안전실무협의회 상정(9.30.)

○ 「표준 제품분류체계 이행내역」 소관 상임위(산중위) 제출('24.11.7.)

○ 관계부처 확대 도입을 위한 협의(환경부 '25.3.7., 식약처 '25.3.20.)

○ **유통 플랫폼 내 표준 제품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5.4월~)**

* 온라인마켓 상품등록시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미인증제품 유통차단 활용

□ 향후 계획

○ 표준 제품분류체계 고도화 및 유통플랫폼대상 시범사업 추진('25~)

○ 표준 제품분류체계 확대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환경부, 식약처) 지속 협의('25~)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1)법무부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업이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의 의무화는 기업활동에 대한 제도·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사무로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행을 위해서는 다수 관계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

- 향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 ’25. 6.「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권실사와 연관된 국제규범 등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여

□ 향후 계획

○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시 참여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화학물질 제조·판매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다만, 원료물질의 수급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권고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다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

- 향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3) 환경부장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744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본 권고 사항은 다수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법 제정에 대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향후, 해당 제도가 논의될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검토 및 협조 추진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1) 법무부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및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한 사무는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다수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

- 향후 해당 제도가 논의될 경우, 기업의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 등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향후 논의 시 검토 및 협조 추진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 (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근로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관장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권고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다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

- 향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3) 환경부장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744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 (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본 권고 사항은 다수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바, 향후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등이 논의될 경우, 환경·안전 등 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검토 및 협조 추진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1)법무부장관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533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사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입증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

- 인과관계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일률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반함

-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민사법상 원칙으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업주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처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까지 도입할 경우 피해와 행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사업주 등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우려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당 권고내용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 시민재해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 이는 산업안전의 영역이 아닌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생산 제품 안전의 영역임

○ 이에, 고용노동부의 소관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3)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제조물 책임법」 등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일부 입법례는 존재

< 관련법규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노출 이후 질환발생 또는 기존 질환 악화, ③노출과 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이 모두 증명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①제조물이 정상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②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③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징벌적 성격의 법률로서,

- 원료·제조물 분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旣 반영

□ 향후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검토 협조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4)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손해배상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 소송상 인과관계 인정은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실관계 영역으로 법률로 일괄 추정하는 것이 민사법 체계에 적합한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분야 2 | 4.16세월호참사 분야(32개)

연번	권고사항	대상
1	▸ 세월호참사 관련 공식 사과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업무체계 구축	대통령
2	▸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수사 또는 감사 실시, 불법행위 발견시 고발 및 징계 요청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국조실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3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 방지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규정	국회의장 인사처장
4	▸ 기록물 고의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 제재 및 처벌 위한 「공공기록물법」 등 개정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5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	인사처장
6	▸ 사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운용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7	▸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전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국정원장
8	▸ 불법사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재정비 및 독립 감찰기구 도입	국회의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9	▸ 세월호지원단 총괄 역할 강화 및 장기지원계획 수립 등 피해지원 개선	국조실장
10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시까지'로 변경	해수부장관
11	▸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해수부장관
12	▸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및 구체적·전문적 교육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13	▸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 및 책임 이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해수부장관
14	▸ 선종·항로 고려 등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해수부장관
15	▸ 평가기간의 전문성 확보 등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개선	해수부장관
16	▸ 「해운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개정* * 운항관리 업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임을 명시	해수부장관
17	▸ 내항여객선사 자체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여객선 안전등급 평가 제도 등 도입	해양수산부
18	▸ 내항일반선 분야 해사안전 감독관 인원 확충 등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해수부장관
19	▸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 * 선사 내 안전관리자 지정,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	행안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	▸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 개선	행안부장관
21	▸ 세월호참사 조사기구 권고 사항 이행 절차 및 결과 기록 등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 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22	▸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해수부장관
23	▸ 「선박안전법」 개정* * 선박 결함신고제도 관련, 신고주체 특정, 위반시 벌칙부여 등	국회의장 해수부장관
24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신고 절차 개선, 수집된 정보 선사 제공 및 교육 활용 방안 마련	해수부장관
25	▸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 공익신고센터 설립	해수부장관
26	▸ 조난 현장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 ·실질적 수색구조 활동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27	▸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해양경찰청장
28	▸ SAR 안전감독관 운영 법적 근거 및 구조본부 운영 점검 기능 강화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29	▸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 내 세계해상 조난과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운용 및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해양경찰청장
30	▸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 일률적·정기적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31	▸ 수색구조 지휘관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등 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32	▸ 구조 자원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수색구조 민·관·군 간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장

2-3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 명령 거부권 규정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의견진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원발의안 2건***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 **22대 국회 개원으로 폐기**

* 기동민의원안(‘20.6.19), 전용기의원안(‘22.4.12)

※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에 관련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상임위 논의 결과 보류(‘18.3.23)

○ **24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

* 용혜인의원안(‘24.12.27.), 이강일의원안(‘25.1.23.), 한창민의원안(‘25.7.4.)

□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법 개정 재추진(연내 국회 제출 예정)

※ 위법한 지시에 관한 불복절차 마련 등

2-5	공무원 교육과정에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 추가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인재개발과 044-201-8224

□ 권고 내용

○ 인사혁신처장은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해, 그 **위법성과 부적절성 등을 교육**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공직가치 교육**을 **신규자 및 승진자 등 직급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및 시책교육에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안내

○ ’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시 공직가치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에 안내 완료 (’23.11.24.)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6	피해자 자료제공 및 이에 필요한 제도 등 마련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02-3150-1312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료 제공)** 개인 또는 집단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 요구 시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제공**

○ **(법령·제도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23. 2.1.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 및 청해진 해운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 228명이 2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위자료 인정됨(친부모 500만원, 기타 피해자 300만원 또는 100만원)

□ 향후 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예정

2-7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국가기록원 이관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약 68만 건 전체(목록 포함)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국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관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자료를 관리 중**임

* 제19조의2 무단 은닉 등 금지, 제27조 폐기 절차 등

○ '세월호' 키워드가 포함된 국정원 생산 자료 대다수가 참사와는 무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이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록물법」(제14조)은 통일·외교·안보 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同法 시행령이 정한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예정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법률 등 재정비) Δ「국가정보원법」 개정('20.12) Δ「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21.3.5)**을 통해 준법 정보활동 기반 마련

* 수집된 정보의 직무 외 용도 사용은 금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환경에 맞춰 직무수행 원칙·범위·절차 등에 대한 별도 지침 등도 제정·운영 중

○ **(독립 감찰기구 도입) 감찰부서에 독립적 직무감찰 권한 부여**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2)경찰청장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감사담당관		02-3150-1312, 3174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규정 재정비) 「경찰관 직무집행법」**('20.12) **개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3)·「정보경찰 활동규칙」(훈령, '19.1) 등 제정**을 통해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칙과 한계 설정

- **(조직 신설)** 본청 치안정보국에 '**준법지원계**'*('18.7)**를 신설**, 현장 점검·교육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준법의식 제고

*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적법성 점검과 행정지도 및 사안에 따라 사실조사와 징계·수사 의뢰도 할 수 있어 부적절한 정보활동에 대한 실효적 조치 가능

○ **(독립 감찰기구 도입) '10년부터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함으로써 **자체 감사·감찰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 감사관실 직원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직 공모 및 적격심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선발 중

-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 제도를 도입('19.5)·운영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실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3)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조직해체)**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기무사 융합정보실을 해체('18.9월)**

○ **(법제화)** 【참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개정을 통해,

- 3不(①정치개입, ②민간사찰, ③특권의식) 조항 신설·유지하고 있으며('18.9월~),

*「국군방첩사령부령」개정('22.11.1.) 이후에서 3不 원칙 지속 유지 중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적 감찰부서 운영) 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의 독립적 감사권 보장 노력**

- 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 보완을 완료함

* '18.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이후 현재까지 1명의 검사, 3명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이 감찰실장으로 보직되어 임무 수행 중

* 또한,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을 감찰지도관으로 보직·운영하여 독립성 강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참고】「국군방첩사령부령」中 불법사찰 금지 관련 조항

○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9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국무조정실장

국조실 세월호지원단 피해지원과 044-200-6304

□ 권고 내용

○ 국무조정실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의 총괄역할을 강화**하고 **전체 피해자 파악 및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지원단의 총괄 역할 강화)** 현재 피해지원·추모사업 이행상황 점검, 관련 기획·조정, 관계기관 협업 지원 등을 旣 수행 중

* 안산·진도 등 피해지원·추모사업 현장방문, 현안별 관계기관 협의·조정, 가족단체-관계부처 간담회 정기 개최(연2회) 및 유가족 의견수렴·소통(수시) 등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계획 수립) 「분야별 피해지원 세부 추진계획('15.4)」 旣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18개 피해지원대책 중 생활지원금·긴급복지 지원 등 9개 대책 추진 완료

□ 향후 계획

○ **(세월호지원단의 총괄 역할 강화)** 향후 피해지원·추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체 등 운영

* 추모시설의 적기 완공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추진상황 관리·지원 등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계획 수립)**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 및 치료 등 **9개 중장기 지원대책 지속 추진**

* 피해자 의료비 지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9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2-10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의 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해수부장관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0-6263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참사 생존자의 치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상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 시까지'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지원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고영인 의원 외 73인) : `23.3.23

○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 `24.2.1.

○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4.5.28.

○ 임시국무회의 의결 : `24.5.29.

○ 공포 : `24.6.4.

=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의료지원금 지 원 기 간 연장	신체적피해	• (시행령) **지원기간**이 **2024년 4월 15일까지**로 규정 - 신체적 피해(제19조) - 정신적 피해(제21조)	• 지원기한 **법에 명시** (5년 연장/ 2029년 4월 15일까지)
	정신적피해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지원금 계속 지원 : ~`29.4.15.**

2-11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해수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사들의 구조적 운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내항여객선의 안전 운항 담보 및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선원안전임금 지원, 선박 수리 및 운항 관리 지원, 선박수리비, 운항관리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이행 현황

○ “국가보조항로 결손지원금” 사업을 통해 **적자 항로**에 대한 **선원임금**, **선박수리비** 및 **운항관리비**를 지원 중

- ’25년 기준 국가보조항로(29개) 및 1일 생활권 구축·적자항로(15개)에 대해 235억원 지원

○ 전체 항로의 안전 운항을 국비로 담보하기 위해 **운항관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 추진 완료

* 선사에서 부담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로 지원(‘25.4.22 시행)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2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치완료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사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15조의12**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 및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하도록 규정**

- 또한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21조는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규정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관련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25.1)**

*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 준수 의무

○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2025년 내항여객선사 경영층 안전교육 실시('25.6)**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6	「해운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해수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비용을 여전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조항이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저해 요소로 확인되는 바, **「해운법」제2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은 법령을 개정**해 운항관리 업무가 선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명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4.3)에 따라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결정**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관계부처 합동 / '24.3.27.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를 위한 **「해운법」 개정** 완료('25.4)

○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25.8 기준)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7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해수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 **권고 내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능을 갖춰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객선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소관 변경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부

□ **이행 현황**

○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적절한 규제 기능을 갖춰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여객선 안전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사고를 야기한 여객선에 대해 선박 안전도 정보를 공표**하는 등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박별 선박 검사 결과, 해양 사고 이력, 안전규정 위반 이력, 운항관리규정 심사 결과 등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 평가를 포함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격년 시행하고(「해운법」 제9조), 평가 결과를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등 정책지원 선정 시 활용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행안부장관·해경청장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549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개최결과에 따라**「유선 및 도선 사업법」일부 개정안 발의**

*「유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해경청-행안부 TF회의 2회 개최('18. 4. 12. / '18. 5. 25.)

<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해경청-행안부) 개최 경과 >

연번	개최일자	주요내용	참석자
1	2018. 4.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상황 등	해경청(3) 행안부(2), 협회(3) 등 10명 내외
2	2018. 5. 25	유도선업 일부개정안 이견 의견토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사항 공유 등	해경청(2), 행안부(3), 해수부(3), 지자체(4)

-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지정.운영 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업체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직무 범위,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안전감독관 제도는 안전관리자 지정제도 도입·운영 이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 검토

- (추진경과) '21대 국회 회기 종료('24.5.29.)에 따라 계류 중이던 개정법률안 폐기, **'22대 국회 재입법 추진 - 입법예고('24.5.21.~31.), 국회 발의('24.7.12.), 행안위 소위 계류중**(~현재)

□ 향후 계획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일부개정 추진, 쟁점사항 국회 대응(8월~)

2-22	외국 도입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해수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노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최초 운항 시점 또는 최초 등록 시점과 이후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선령 기준과 상관없이 최초 도입 시 수행되는 정기검사를 포함해 최소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연안여객선 선박검사는 해외 도입 중고선박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 중

- 선박검사를 통과한 외국 도입 선박에 대해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여야 할 기술적 근거가 없으며,

* 외국의 경우 선령제한 관련 규정이 없고 선박검사를 통해 안전 확보

- 외국 도입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 제한 적용 시 수입제한 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법 저촉이 우려되므로, 중장기 검토 필요

○ 도입 선령을 10년 내로 제한하기보다는 정기 및 중간검사 등의 철저한 검사로 국내 건조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내항여객선의 선령별 검사 종류》

구분	검사종류	검사시기	관련규정
선령 20년 이하	(별도)건조검사	건조 또는 도입 시	선박안전법 제7조
	정기검사	매 5년	선박안전법 제8조
	제1종 중간검사	매 1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선령 20년 초과 25년 이하	정기검사	매 1년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선령 25년 초과 30년 이하	정기검사 +피로강도평가 등	매 1년	
	선박관리평가	매 1년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5	별도의 공익신고센터 설립	해수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 선박의 기계적 결함과 선박 소유자·선장·선원 등의 의무와 관련된 신고는 해수부 산하 지역 항만청 등에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능동적 신고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를 설립**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신고자 공개금지 규정과 온라인 신고센터 마련**으로 능동적 공익신고 제한 문제가 해소되어 **별도 공익센터 설립할 필요성이 낮음**

- 해양수산부 온라인 결함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방문 또는 서면 제출 등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누구나 제한없이 능동적으로 선박 결함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

  * 결함 신고자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21.9~)

- 또한,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법령 및 처벌 : 「선박안전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공익신고자 보호법」(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내 선박결함신고 메뉴 추가>



해수부 홈페이지 선박결함신고 메뉴



선박결함신고 작성 화면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6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 마련	해경정창

해경청 구조대응계 경위 남궁석 (2345)

【 사참위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대응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 관서의 특성을 고려해 **조난현장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할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고 본청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과제

○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혼선을 최소화

○ 조난현장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하는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

□ 이행 현황

○ **(상황처리 개선)** 중요상황 발생 시 **광역구조본부(지방청장) 중심의 상황대응**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는 **상황처리 개선방안* 시행**

* '23년 2월「전남 신안해역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상황대응 분석·평가

◈ **상황대응 분석·평가 주요 개선사항(즉시시행) : 광역구조본부 중심 상황대응**

→ 신속한 세력동원, 기관간 협조 등 효과적인 대응·지휘를 위해 중요상황은 광역구조본부장이 지휘

○ **(규칙 개정)** 광역-지역구조본부의 명확한 임무 지정 및 역할분담, **광역본부 중심의 상황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24.2월)**

▸ 광역·지역구조본부 동시 가동의 경우, **광역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 정비**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개정)

개정 前	개정 後
제8조 ③ 중앙구조본부장은 사고의 규모 및 양상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광역구조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역구조본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 받아 직접 지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광역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1. 중앙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지역구조본부를 통합하여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27	수색구조 활동의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해경청장

해경청 구조대응계 경위 남궁석 (2345)

【 사참위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법」과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수색구조 활동의 총괄·조정을 위한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과제

○ 「수상구조법」과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

□ 지휘·조정체계 재정립 필요

○ 「수상구조법」 제17조*는 수색구조 현장 지휘는 구조본부의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제17조(현장지휘) 조난현장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행함

○ 개정 전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조본부장은 구조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관이 수색구조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

□ 이행 현황

○ **수색구조활동의 총괄·조정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을 위해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개정**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구조본부 규칙 (’24.2월)	**<제5조제3항 별표1>** **- 구조본부장** : 구조본부업무 총괄 **- 조정관** : 수색구조업무 총괄	**<제5조제3항 별표1>** **- 조정관 사무 중 「수색구조업무 총괄」을 「업무조정」으로 수정** **→ 각급 본부장, 조정관 담당사무 명확화**
수색구조 지침서 (’24.12월)	**<해양수색구조 지침서>** 임무조정관(SMC)은 별도 지정이 없는 한 지역구조본부 수색구조 담당과장	**<해양수색구조 대응 가이드북>** 사참위 권고사항에 따라, SMC는 단일한 지휘관으로써 지역구조본부장이 임무 병행

2-32	수색구조 시 민·관·군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해경청장

해경청 구조협력계 경감 위성휴 (2247)

【 사참위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 시 민·관·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이 보유한 구조자원의 연계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조지원단체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과제

○ 민·관·군 구조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 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이행 현황

○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지방청·소속서 주관 수난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중(분기별)

【민·관·군 합동훈련 현황】

▸ 훈련 횟수 : 年 101회 (해경청 주관 年 1회 / 각 지방청[5개소]·경찰서[20개소] 분기 1회 / 年 4회)

* 연도별 실적(회) '19년(99), '20년(88), '21년(100), '22년(101), '23년(101), '24년(102)

▸ 훈련 유형 : 사회재난, 자연재난 및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를 적시성 있게 훈련 주제로 선정, 관계기관·단체간 임무·역할 정립 등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민간구조지원단체 지원)** 해양구조·구난 민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 민간구조대원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20년~)

-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수당 기준 상향('25.1월) 및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윤재갑('22.10월)·이달곤 법률안('22.11월) 발의 → 입법공청회 개최('23.4월) → 법률안 국회심의(~'23년) → 본회의 통과('24.1.2.) → 시행('25.1.3.)

분야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22개)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1	▸ 독립·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인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2	▸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안전/재난)으로 분법 추진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3	▸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재난관리 중심으로 전환, 안전분야는 부처별 추진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4	▸ 안전정보 연계를 위한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5	▸ 재난피해자를 위한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국무총리
6	▸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인권위원장
7	▸ 피해자(가족)에게 수습·수색 정보제공 법제화 등 수습홍보 개선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8	▸ 구호 약자의 범위 법제화 등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개선	행안부장관
9	▸ 재난회복 개념 명시하고 무형의 피해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복구 개선	행안부장관
10	▸ 동원·봉사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 강화를 위해 재난법, 의사상자법, 수상구조법 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 명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복지부장관 해양경찰청장
11	▸ 재난 추모사업 법제화 및 매뉴얼 마련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12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	행안부장관
13	▸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매뉴얼 등 표준절차 개선	행안부장관
14	▸ 선박사고시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지휘공백 해소 방안 마련,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에 반영	해양경찰청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15	▸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	행안부장관
16	▸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매뉴얼 개선 등 재난심리지원 강화	행안부장관
17	▸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정신건강복지법」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장 복지부장관
18	▸ 손해배상시 남녀 형평성, 만12세 이하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 책정	법무부장관
19	▸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교육기관 역할 개선	교육부장관
20	▸ 재난안전법에 재난피해자 법률지원 규정 신설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21	▸ 가습기살균제, 4·16세월호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필요	국가기록원장
22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방안 마련	국가기록원장

3-1	독립·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행안부·환경부·해수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조사과 044-205-62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742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0-626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고려사항)** 재난원인조사의 주 목적을 고려할 때, 부처별 조사기구 중심 조사 체계 유지 필요

※ 재난원인조사는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발굴이 주목적으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함

○ **(대안이행)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3.6.27.)

※ 재난원인조사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신설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 및 민·관 합동조사 지속 추진**(계속)

□ 관련 추진 사항

○ 「생명안전기본법」 및 「(가칭)사회재난관리법」 제정과 연계하여 독립적인 개별조사기구 설립* 검토 중

* 21대 대통령 공약사항, 안전치안점검회의('25. 6. 5)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사고 원인 규명 및 투명한 결과 공개', '사건·사고 발생 즉시 원인조사 착수, 예측 가능한 사건·사고로 밝혀질 시 엄정한 책임 물을 것'

참고	독립 상설 재난조사기구 설치 등 관련 그간 경위

○ ('16.9.)「**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독립조사기구 설치' 제언**

○ ('17.7.) **전임 정부 국정과제 채택** 및 **행안부 실천계획** 제출

○ ('17.12.)「**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발의**(박주민 의원)

* 행안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립 추진' 보도자료 배포('18.2.28.)

○ ('18.3.) 현안 재난에 대한 **독립조사기구**인「**가습기살균제사건·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출범**

○ ('18.8.)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외부 연구용역* 실시**

* 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조직 및 인력.구성안, 법률안 등 제시

○ ('18.8.) **유사 목적**의 **독립조사기구**인 사참위 **설립 등 감안**,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추진 1차 유예** 결정*(BH 협의)

* 정치 환경,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참위 운영 상황(~'20.12월)을 지켜보고 추진

※ ('20.12.)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22.6.)

○ ('21.3.)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등 고려,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추진 2차 유예***(BH 협의)

* 現 정부 임기 내 설립 준비 → 차기 정부에서 논의

○ ('22.2.)「**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再발의**(박주민의원)

○ ('22.9.) **사참위 활동 종료 시,** 우리부에 **독립조사기구 설치 권고***

* 독립적 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로서 '(가칭)중대재난조사위' 설립 추진

○ ('23.4.~11.) **독립 상설 조사기구 설치**, 재난원인**조사 과정 내 피해자 참여 보장** 등, 관련 **의원 입법안 다수 발의**(회기만료 폐기)

*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운영법 제정안」('22.2.10./박주민),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23.4.11./이성만),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23.6.8./오영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23.7.4./김용민),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23.11.13./임호선)

3-2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법 추진	행안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가진 법체계적·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을 기본법인 '안전기본법'과 집행법인 '안전관리법' 및 '재난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법 법체계 개선 정책연구('22.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재난대응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체화를 위한 법제연구('23.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재난안전법 체계 개선과제를 세부과제로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법령 정비**

* (종합대책 과제 30) 재난안전관리 법령의 체계적 정비

- 「재난안전 법제 정비 TF」 운영, 소방·경찰·해경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명시) 등 법률 17건 개정 완료

○ 안전관리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검토 추진**

* 박주민·한창민·용혜인의원 대표발의('25.3.10.) →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7.1.)

- 조문별 법적 사무, 작동성 등을 분석하여 기본법-집행법 등 구분

□ 향후 계획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관련 국회 대응(9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검토 지속 추진

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무총리·행안부장관

국조실 안전정책팀 044-200-2342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71

□ 권고 내용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분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5~'29)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24.6.28)

*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 관리 권한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4.7.17 시행)

○ 각 부처별로도 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24.10)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 중

3-4	안전정보 연계를 위한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행안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7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연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6)

- **효율적인 안전정보* 수집.공개.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신설**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건수,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등급), 지역별 재난관리평가 결과 등

○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정기 3회, 수시 1회)

○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로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3.8.8.) 및 운영규정 신설('23.9.8.)

○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23.10, '24.6, '24.11, '25.6서면)

○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계속, 반기 1회)

3-5	재난 피해자 지원 조직 신설 및 지원체계 마련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재난안전총괄과 044-200-2348

□ 권고 내용

○ 국무총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으로 인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조직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 중

- **(이태원 참사)** 행안부, '10.29 이태원 피해구제추모지원단'(총리 훈령) 설치·운영('25.1.2~)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토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총리 훈령) 설치·운영('25.1.20~)
- **(경북 산불)** 행안부, '산불 피해복구지원단'(총리 훈령) 설치·운영('25.4.21~)
- **(오송 참사)** 행안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신설을 위한 총리 훈령 제정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7	피해자(가족)에게 수습·수색 정보제공 법제화 등 수습 홍보 개선	행안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재난대응총괄과, 수습지원과 044-205-412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참사와 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원인 및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획득하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등에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열람하고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법」등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임무, 전담체계구성 등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피해자 중심의 재난수습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ㅇ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재난현장에 중앙부처 수습지원단을 파견토록 규정을 신설(「재난안전법」 제14조의2)하고('14.12.), 정례브리핑을 통한 정보 제공, 피해가족 전담공무원 지정 등 재난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21.9.)

- 지자체장이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규정을 개정(법 제16조제3항)하고, 현장민원실 운영, 의료·장례지원 등 재난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

  * 행안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2019.)

ㅇ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행동매뉴얼 강화

- 재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동 매뉴얼 개선사항 마련('22.11월)

○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재난수습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을 통해 지원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권고사항의 취지를 달성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부상자·유가족 지원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3-8	구호 약자 범위 법제화 등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개선	행안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32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구호 약자 범위를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총괄부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책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범위에「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구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호약자**'가 일부 포함됨

* 제3조(정의)9의3호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 제3조의2(구호약자) :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기타 신체질환자 등

○ 또한, **재난법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재**해구호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여 실시 중**

- 재난법의 '안전취약계층' 중 재해를 입은 이재민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일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우선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4조 : 구호약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등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에도 고령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개별구호물품 지원 및 별도의 휴식 및 놀이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내용 포함

3-9	재난회복 개념 명시 및 무형의 피해 기준 추가	행안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지역의 실효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하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항목에 추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안전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 피해에 대한 일상 회복' 개념을 명시**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3.5.16.) 및 시행('23.8.17.)

○ 재난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하는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로 추진 완료('23.2.~.12.)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유·무형의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내용 포함)

- 지역사회 회복, 지역 상업 회복*, 자연환경·문화재** 측면의 회복 등 무형의 피해까지 포함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중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업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지원 신설('23.7.25.)

** 문화재 복원 등은 자연재난 복구 기준을 준용하여 복구계획 수립 중

○ 소상공인·중소기업·1차산업 경영안정 지원 근거 마련 완료(5.27.)

- 「재난안전법」 개정('25.5.27.)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피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마련 중('25.11.28)

○ 마을 공동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을단위 복구 시범사업 추진

-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단순 복구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행안부, 5개소), 특별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 향후 계획

○ **하위법령 개정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세부 기준 마련**(~11월말)

3-10	민간인력 치료와 보상 조항 개선 및 정신적 질환 명시	행안부장관

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8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 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3.12.26.), **시행**(’24.6.27.)

- 부상에 정신적 손상을 포함하고, 치료비 지원근거 마련

※ 재난안전법에 자원봉사 인력 치료비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치료비 지원 가능

3-11	재난 추모사업 법제화 및 매뉴얼 마련	행안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재발 방지 등 교훈 계승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의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을 명시**하고 추진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부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추모사업‘ 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지침에 旣마련(’16년)하여 시행 중

※ ①「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3호라목(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및 [별표]제2호라목(추모사업 비용 부담기준)
②「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 지침」[별표]제2호4·5(정부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실시 요령, 추모사업 실시요령) 등

○ 재난 희생자 추모사업 내용이 포함된 연구 용역* 추진(‘23.2~‘23.12.)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희생자 추모사업 관리방안(가이드라인)‘ 내용 포함, ’23.2.~12.)

○ 정책연구를 통해 추모사업 업무 안내서 마련, **「‘24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 ‘추모사업 업무 안내서’ 반영 발간 완료(‘24.12월)**

3-12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	행안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거주자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생계비 등 생활 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재난안전법」제66조제4항 :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운용 중으로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

*「시·도/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시·도/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도/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호(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먹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생략) 2. 간접지원: (생략) 3. 피해수습지원: (생략)	**제4조(지원기준)**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생략)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해수부·행안부장관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7
행안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044-205-619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상자 육상인계 관련 현장지휘 공백방지와 사상자 유형별 후속조치 명확화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선박사고 표준매뉴얼(해수부 주관, 행안부 승인)」의 개정 방안 협의***

* 행안부 주관 해양선박 재난대응 정책협의회 개최('22.11.30/ '23.03.30/ '23.09.25.), 협의 완료(~'24.7.17.)

< (참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 논의내용* >

논의안건	논의결과	협의결과
① 사상자 육상인계지점 지휘공백 문제	사상자 육상 인도과정과 인계 시 현장지휘 공백과 기관 간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재난의 범위에 따라 구성된 중대본 또는 중수본에서 총괄·조정 수행	완료
② 대규모 인명사고 상황단계 구분 및 조치	해경에서 수색구조지침서 및 선박사고 표준대응절차와 복지부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뉴얼 작성 및 인명구조 활동 실시	완료
③ 사상자 유형별 후속조치 구분	육상인계지점에서의 인계후 1차 구조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며 이후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주관기관인 복지부에서 후속조치 및 사상자 명단 작성 실시	완료
④ 사상자 및 전체 피해자 명단의 작성 인계 총괄기관		완료
⑤현장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 절차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육상인계지점 지휘 부처와 관할 보건소에서 협의후 추진하며 출입통제와 신원조회는 경찰청에서 추진	완료

○ **사상자 육상 인계**시 **총괄·조정**기능 신설 및 인계 과정 전·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화**하는 **「선박사고 표준매뉴얼」개정 완료** ('25.1.14)

* △[**육상인계 총괄·조정**] 중대본 구성시 '행안부'/미구성시 '해수부', △[**사상자 인계**] 해경청 → 소방청(중증도 구분, 구조·이송 지원), △[**임시영안소**] 보건소, △[**현장 출입통제**] 경찰청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5	체계적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 매뉴얼 마련	행안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33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양 관련 부서 협의)

□ 이행 현황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보건복지부, ‘23.3.20)

※ 재난발생시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에서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현황 및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 ’24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안) 의견조회 시 검토요청(→보건복지부, ‘23.11.6.)

※ 보건복지부에 사참위 권고사항(의료서비스 내용 및 범위 등) 검토요청

○ 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와 행안부 재난구호과 간 실무협의 실시(‘25.7.31.)

- 양 부처 간 실무협의 이후, 복지부는 ’25.8.1.(금)부터 부처 내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를 진행 중

□ 향후 계획

○ 복지부,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범위 및 방법 등 구체화(8월~)

○ 행안부, 복지부 마련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범위 등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안부)에 반영(~12월)**

3-18	군미필·아동 관련 배상금 형평성 개선안 마련	법무부장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 **군미필 남성의 일실수익 산정에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은 향후 성장 과정의 후유장해와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군미필 남성)** 현행 국가배상액 산정 방식이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0.31. 시행)

○ **(후유장해) 법원은** '후유장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현행 법령 하에서도 만 12세 이하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9	재난대응·피해지원·추모 등 교육기관 역할 개선	교육부장관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 권고 내용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계획과 매뉴얼에 반영하고「학교구성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며,「학교안전법」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추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①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24. 조치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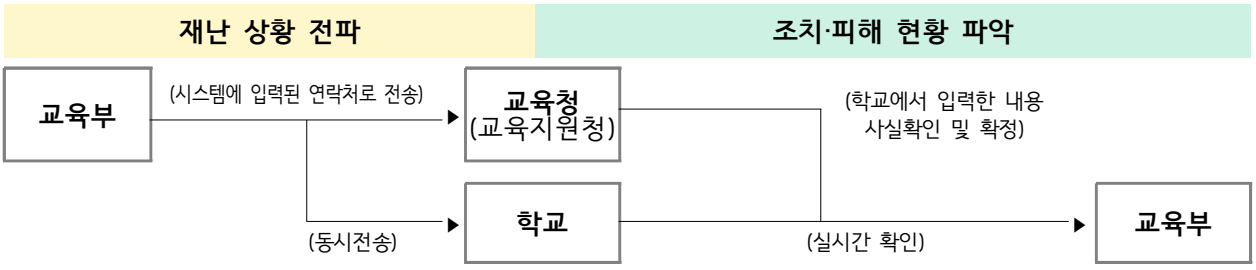
○ (**예방·대비**) **재난 유형별 대책 마련** 및 학교시설 표준 매뉴얼 수시 개정

○ (**신속 대응**)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간 **재난 대응체계 정비 완료**

- 재난 발생 시 자체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당부서별 **학사운영조정, 인명·시설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 (교육안전정책과)영유아안전정보과) 상황 관리 총괄, 시설피해, (학교교수학습혁신과) 학사운영조정 등

※ 종전에는 학교→교육(지원청)→교육부로 수기 취합받아 상황 파악이 오래 걸렸으나, 현재는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입력받아 1시간 내 파악 가능



- 인명피해는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현장 파견 및 상황 관리, **심리치료, 공제급여 보상** 등 피해자-시도공제회 간 **조정·지원**

- 시설피해는 학교 및 교육청 요청 시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 파견,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 실시** 등 **상황 관리**

○ (**피해 복구**) 학사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및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②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마련 및 교육 강화 (`24. 조치완료)

○ 학생 마음건강 **전담국·부서 신설**(`24.1.) 및 **위클래스, 위센터,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 대상 **집중심리상담 지원**

○ 재난·사고로 직·간접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교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시설법」 `22.6.)

- 재난·사고 **트라우마 해소** 등 **재난 특화 심리회복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교육시설 재난 심리지원 안내서)'** 개발(`23.9.)

① 현장대응	② 초기대응	③ 초기돌봄	④ 지속돌봄
재난발생 48시간 이내	재난발생 1주일 이내	재난 발생 1개월 이내	재난 발생 1개월 이후
가. 안전확보 나. 학생-학부모 연결 다. 언론대응 및 정보공유 라. 심리적 외상수준 확인 마. 안정화 바. 접촉(심리 안정화 매뉴얼 등 배포)	가. 정보수집 나. 실제지원 다. 촉발자극관리 라. 애도반응 이해 <초동대응 컨설팅>	가. 안정화 기술 나. 지지적 의사소통 다.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 라. 돌봄제공자 케어 <안정화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주기별 관리 나. 전문적 치료 연계 <1:1 개인상담 등 지원>

- 학교급별 학생-학부모-교직원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13종) 및 재난 트라우마 대응 방법 등 **찾아가는 사전예방교육 실시**

※ 지원 현황: (`22.) 79개교, 11,825명 → (`23.) 68개교, 19,485명 → (`24.) 54개교, 20,228명

③ 다수 학교구성원 피해에 대한 교육기관 역할 개선 (`25. 조치완료)

○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 **추모사업 추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신속히 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 및 '**학생 재난 피해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5.4.)' **제정 완료**

3-20	재난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행안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배·보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해·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합동으로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추진 중**('16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사례>

('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 ('17년) 여수수산시장 화재, 인천소래포구어시장 화재, 포항지진, ('19년) 고성·속초지역 산불, ('20년) 코로나19, ('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수도권 집중호우, 이태원 참사, ('23년) 충청권 등 집중호우, ('24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의사집단행동,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 아울러, **법률지원을 포함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재난현장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추진 중**

* ▲민원접수 ▲장례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사항 통합 안내·접수

** 김병기·임호선·백선희·민형배·김기현의원 발의(총 5건) →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25.7.1.)